

인천광역시 월미도사건 피해주민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월미도사건 피해주민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1년 3월 21일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가. 한국전쟁 중 인천광역시 월미도 내 월미산 일대는 인민군의 지하요새가 있던 곳으로 인천상륙작전 당시 아군의 폭격 등으로 지역주민의 전 재산이 소실되었고, 많은 주민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하였음. 또한 인천상륙작전 후 軍(미군·한국해군)의 주둔 및 인천광역시의 공원지정 등으로 주민들이 살던 거주지에 대하여는 아무런 지원 및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나. 따라서 인천상륙작전과 관련하여 거주지를 잃은 사람에게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을 지급하는 한편, 아군 폭격에 의하여 부상당한 사람에게 의료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인권신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월미도사건의 피해주민 및 그 유족의 심사·결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월미도사건피해주민지원심의 위원회를 둠.(안 제4조)
- 나. 피해주민 중 거주지를 잃은 사람 또는 유족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을 지급 하도록 함.(안 제5조)
- 다. 피해주민 중 계속 치료를 요하거나 상시 개호 또는 보조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그에 소요되는 의료지원금을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도록 함.(안 제6조)
- 라.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생활안정지원금 및 의료지원금 등을 지급 받은 경우와 잘못 지급된 경우에 지원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토록 함.(안 제 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4월 6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의회의장(참조 : 시의회 기획행정전문위원실, 전화 032-440-6213, 팩스 032-440-876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 출 자	해당사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 고
○ 주 소 :			
○ 성 명 :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4. 참고자료

인천광역시 월미도사건 피해주민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1부

인천광역시 월미도사건 피해주민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월미도사건의 피해주민과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인권신장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월미도사건”이란 한국전쟁 중 인천상륙작전에 따라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월미도 내 월미산 지역 일대에 대한 아군의 폭격 등으로 주민들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하고 월미산 일대에 미군의 주둔으로 인하여 주민들이 아무런 지원 및 보상을 받지 못하고 거주지를 잃은 사건을 말한다.
2. “피해주민”이란 월미도사건과 관련하여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고 거주지를 잃은 사람 또는 아군의 폭격 등으로 사망(상이를 입고 그 후유증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행방불명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3. “유족”이란 피해주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다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피해주민 지원 등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한 것은 그 규정을 적용하고 그 밖의 사항은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4조(지원심의위원회)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피해 주민 및 유족의 심사·결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월미도사건피해주민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피해주민 및 유족의 심사·결정
2. 제5조에 따른 생활안정지원금 및 제6조에 따른 의료지원금(이하 "지원금 등"이라 한다)의 지급대상 및 범위
3. 지원금 등 지급액 및 지급방법
4. 지원금 등을 지급받을 사람의 적격성 결정
5. 그 밖에 시장이 피해주민 지원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고 위원은 시장이 피해주민의 추천을 받은 사람, 관련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시 관계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피해주민의 추천을 받은 사람은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총수의 30퍼센트 이상으로 하고 의원은 3명 이상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자치 행정과장이 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 외에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⑧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생활안정지원금) 시장은 피해주민 중 거주지를 잃은 사람 또는 유족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을 지급한다.

제6조(의료지원금) 시장은 피해주민 중 계속 치료를 요하거나 상시 개호 또는 보조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사람에게 그에 소요되는 의료지원금을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제7조(결정통지) 시장은 지원금 등이 결정된 즉시 그 결정서를 등기우편으로 개별 통지해야 한다. 다만, 통지서가 반송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등의 법적 절차에 따른다.

제8조(지급청구) 지원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원금 등 지급청구를 해야 한다. 다만, 해외거주자, 출국자, 재소자 등 부득이 이 기간 내에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9조(환수) ① 시장은 지원금 등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

1.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2. 잘못 지급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환수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연체이자율을 가산하여 되돌려 받고, 되돌려 주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환수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발췌사항

관계법령	□ 민사소송법 제194조(공시송달의 요건) ① 당사자의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외국에서 하여야 할 송달에 관하여 제191조의 규정에 따를 수 없거나 이에 따라도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제195조(공시송달의 방법) 공시송달은 법원사무관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그 밖에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하여야 한다. 제196조(공시송달의 효력발생) ① 첫 공시송달은 제195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 다만,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뒤의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긴다. ② 외국에서 할 송달에 대한 공시송달의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의 기간은 2월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은 줄일 수 없다.
관련법규 정비대상	
관련자료	